

예비심사 안건

의안번호	제 2013- 호
의 결 연월일	2013. 6. . (제 회)

의 결
사 항

개인투자조합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(고시)
일부개정(안)

신 설 · 강 화 규 제 심 사 안

제 출 자	중소기업청장 한정화
제출연월일	2013. 6. .

목 차

I. 규제 심사(안) 개요	1
□ 요 약	1
II. 규제심사안	2
1. 개인투자조합의 신탁의무	2

I. 규제 심사(안) 개요

□ 요약

규제 사무명	현행 규제내용	변경(또는 신설) 규제내용
<p>1. 개인투자조합의 신탁의무</p>	<p>○ <신설></p>	<p>○ 출자금 총액이 10억 이상인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개인투자조합 재산을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</p> <p>⇒ (사유)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 개정('13.3.22.) 및 시행('13.6.23.)에 따라 신탁의무 발생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투자조합의 규모를 고시에서 설정</p> <p>* (법령개정 내용) 출자금 총액이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개인투자조합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위탁해 관리해야함</p> <p>○ 신탁의무 있는 업무집행조합원의 경우 조합등록시 신탁증명서 제출.</p> <p>⇒ (사유) 법에 따른 신탁의무 이행을 확인하기 위함.</p>

II. 규제심사안

1. 개인투자조합의 신탁의무

1] 규제 신설 (또는 강화) 내용 (도입배경)

- 개인투자조합은 조합결성 최소규모가 2억원 이상으로 규모가 크지 않았으나, 최근 그 규모가 점점 커짐에 따라 조합원들의 재산을 보호할 필요 생김
-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2 개정('13.3.22.)을 통해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조합의 업무집행 조합원에게 조합 재산의 신탁의무 부과

제 13조의2(개인투자조합의 운영 등) ① 출자금 총액이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개인투자조합 재산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.

1.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보관을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탁업자(이하 "신탁업자"라 한다)에 위탁할 것

(추진방안)

- 벤특법에서 개인투자조합 규모 결정에 대해 위임한 사항을 고시에서 결정

(주요내용)

- ① 출자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개인 투자조합의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위탁
- ② 신탁 후 조합등록 신청시 신탁 증명서 제출

<조문 대비표>

개 정 전	개 정 후
<p>제5조(조합출자금의 납입) ①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<신 설></p>	<p>제5조(조합출자금의 납입) ① (현행과 동일)</p> <p>② (현행과 동일)</p> <p>③ <u>법 제13조의2제1항에 의해 출자금 총액이 10억 이상인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보관을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탁업자에 위탁해야 한다.</u></p>
<p>제6조(조합등록 신청) ① (생략)</p> <p>1~7. (생략)</p> <p>③ <신 설></p>	<p>제6조(조합등록 신청) ① (현행과 동일)</p> <p>1~7. (현행과 동일)</p> <p>8. <u>제5조제3항에 의해 신탁 의무가 있는 조합의 경우 신탁 증명서 1부</u></p>

2] 규제영향분석서

1. 분석대상 규제개요

규제사무명 등	등록번호	미등록		구분							
	등록단위	주규제	부수규제	신설	○	강화		내용 심사		존속 기한 연장	
		○									
	개인투자조합 신탁의무		경제적 규제	○	사회적 규제			행정적 규제			
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 벤처투자과 창업벤처국장 백운만, 벤처투자과장 이병권(042-481-4416) 										
관련규제수 및 근거법령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2제1항 										
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	유형		의견수렴 방식				의견내용				
	피규제자	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	행정예고 (5.31~6.20)				없음				
	이해관계자	개인투자조합 조합원	행정예고 (5.31~6.20)				없음				
	관련 부처	해당없음		해당없음				없음			
규제존속기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관련 법률인 『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』에 신탁제도의 유효기간이 없으며, 또한 관련 법률이 한시법이 아니므로 별도의 존속기한을 설정할 수 없음 										
현행규제 및 신설(강화) 규제의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현행 규제 <신 설> 강화 규제 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출자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개인 투자조합의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위탁 ② 신탁의무 있는 경우 조합등록 신청시 신탁증명서 제출 										
규제체계도	개인투자조합 재산 신탁 업무집행조합원 → 신탁업자				➔	신탁증명서 제출 업무집행조합원 → 중소기업청					

2.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

(1) 규제의 필요성

1-1. 문제 정의

- 개인투자조합 규모가 점차 대형화 됨에 따라 일반 조합원의 재산을 보호할 필요

1-2. 규제의 신설·강화 필요성

정부 개입의 필요성

-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신탁의무 발생하는 개인투자조합의 규모를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
- 개인투자조합보다 규모가 큰 창투조합의 경우 모든 창투조합의 재산에 대한 신탁의무가 이미 부여되어 있는바,
 -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신탁의무 부과하는 것은 개인투자조합의 건전운영을 위한 정부의 최소한의 역할임.

해외 사례 : 없음

(2) 규제대안검토 및 비용·편익 분석과 비교

대안 검토

- ① 벤특법에서 신탁의무 발생하는 개인투자조합의 규모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(규제대안 없음)
- ② 신탁의무 이행확인을 위해 신탁 증명서 제출 필요 (규제대안 없음)

□ 비용·편익 분석

- (비용) 조합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위탁함에 따라 신탁 수수료 발생
- (편익) 10억 이상 규모의 개인투자조합 재산을 업무집행조합원 임의로 보관할 수 없어 일반 조합원의 재산 보호 가능

(3) 규제내용의 적정성과 실효성

3-1 규제의 적정성

- ① 출자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개인투자조합의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위탁
 - 일반적으로 개인투자조합보다 결성규모가 크며, 신탁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창투조합(30억) 보다는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으며,
 - 자본시장법 상 자금모집 시 금융위에 신고 의무 발생하는 공모 기준은 10억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,
 - 법 체계상 통일성을 기하는 측면에서 신탁의무 발생 조합규모를 10억 이상으로 설정
 - '12.1.1. 부터 '13.5.24.까지 결성된 10억 이상의 조합은 2개로(20%) 적정한 수준

<개인투자조합 규모별 건수>

(2012.1.1.~2013.5.24.)

개인투자조합 규모	건 수	비 율
2억 ~5억원	13	65%
5억 ~10억원	5	25%
10억원 이상	2	10%
계	20	100%

3-2 이해관계자 협의

-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(5.31~6.20) 결과 이견이 없었음.

3-3 규제 의 실효성

- 조합의 재산을 싨탁업자에 위탁함으로써 업무집행조합원의 자의적 재산 보관을 방지하고, 일반 조합원의 재산 보호 싨효성 제고에 기여